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9.12.09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일부 조문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, 「지방자치법」” 을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지방자치법」” 으로 함. (안 제1조)
- 나.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(이하 ” 구 “라 한다)” 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 로 함. (안 제2조)
- 다. “시설” 을 “청소년시설” 로 함. (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, 안 제5조 제목, 안 제6조제1항)
- 라. “시설사용자” 를 “청소년시설 사용자” 로 함. (안 제4조제1항)
- 마. “사용료 등” 을 “사용료등” 으로 하고, “별표 1” 을 “별표” 로 하며, “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” 를 삭제함. (안 제7조 제목 및 제1항, 제3항제7호)
- 바. “비영리법인, 청소년단체 등에” 를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” 로 함. (안 제8조제1항)
- 사. “정하거나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른다.” 를 “정한다.” 로 함. (안 제9조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, 「지방자치법」” 을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지방자치법」” 으로 한다.

안 제2조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(이하 ” 구 “라 한다)” 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 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, 안 제5조 제목 그리고 안 제6조제1항 중 “시설” 을 “청소년시설” 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 중 “시설사용자” 를 “청소년시설 사용자” 로 한다.

안 제7조 제목 “(사용료 등)” 을 “(사용료등)” 으로 하고, 같은조 제1항 중 “별표 1” 을 “별표” 로 하며, 같은조 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.

안 제8조제1항 중 “비영리법인, 청소년단체 등에” 를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” 로 한다.

안 제9조 중 “정하거나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른다.” 를 “정한다.” 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제18조,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14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제18조 및 「<u>지방자치법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(이하 “<u>청소년시설</u>”이라 한다)”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(이하 “구”라 한다)</u>가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등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운영의 원칙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<u>구청장</u>”이라 한다)은 <u>시설</u>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, <u>시설사용자</u>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운영의 원칙) ① ----- -----<u>청소년시설</u>----- ----- -----<u>청소년시설 사용자</u>----- -----.</p>
<p>② 청소년시설은 「<u>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</u>」 제2조제3호,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<u>시설별</u>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청소년시설</u>----- -----.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원안과 같음)</p>

원 안	수 정 안
<p>제5조(시설의 이용) (생 략)</p> <p>제6조(사용시간)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다만,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7조(사용료 등) ① 구청장은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(이하 “사용료등”이라 한다)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7.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</p> <p>제8조(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,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른다.</p>	<p>제5조(청소년시설의 이용)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6조(사용시간) ① ----- ----- -----<u>청소년시설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7조(사용료등) ① ----- <u>별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③ (원안과 같음)</p> <p>1. ~ 6. (원안과 같음)</p> <p>< 삭 제 ></p> <p>제8조(운영의 위탁) ① ----- -----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<u>청소년단체에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9조(시행규칙)----- -----<u>정한다.</u></p>